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 분야의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·소통 필요성 증대로 고용노동부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나등급”을 “가등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대변인) ① (생 략)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<u>나등급</u> 으로 한다. ③ ~ ⑥ (생 략)	제2조(대변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가등급</u> - 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